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2008.01.17
개정 2009.01.28
개정 2009.09.04
개정 2009.10.07
개정 2012.04.04
개정 2014.01.08
개정 2014.12.30
개정 2015.05.13
개정 2017.01.16
개정 2017.07.26
개정 2020.01.15
개정 2023.03.29
개정 2024.01.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상담, 학교 교육 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이하 “시” 라고 한다) 청소년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4.12.30., 2023.3.29.>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4.1.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하대원동)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9.4., 2014.1.8., 2014.12.30.>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9.4.>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개정 2014.1.8.>
3. 청소년 시설·사업의 수탁과 운영·관리 기능
4.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평생학습 관련 사업 <신설 2014.12.30.>
5. 청년의 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자립기반에 관한 사업 <신설 2024.01.24.>
6.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4.12.30., 2024.01.24.>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8., 2020.1.15.>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시에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④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등 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 할 수 있다.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의1(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임원(이사장 제외)
2.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8.]

제8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업 또는 독지가의 협찬금, 재단의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재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③ 삭제 <2023.3.29.>

제13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재단은 매년 초 기본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개정 2017.1.16.>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7.1.16.>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 인사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5.13.>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6., 2020.1.15.>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 의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9.1.28.>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시 청소년업무관련국장
4. 성남교육청 청소년업무관련국장

⑤ 감사 2인은 선임직 감사 1인과 당연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되,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청소년업무관련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3., 2017.7.26.>

-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4.>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제19조의1(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09.1.28.>

-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사고(선거 출마, 수감 등으로 시장의 업무를 권한 대행자가 수행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장 권한 대행자(부시장)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3., 개정 2017.1.16.>
-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5.13., 개정 2017.1.16.>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7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1호의 순서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6.>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8.>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제2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단, 당연직 임원은 해당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9.>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6.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7. 삭제 <2023.3.29.>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7.1.16.>

제22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8., 2012.4.4., 2017.7.26.>

② 재단 임·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임·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임·직원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4., 개정 2017.1.16.>

제24조(직원의 복무) 재단의 직원은 재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16.>

제26조(신분보장)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이사회

제27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6.>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09.9.4.>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제30조(의결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제2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제3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1인과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0.1.15.>

③ 위원회는 의회의원과 청소년업무 종사자 및 관련자로 구성하며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업무) ① 각 위원회는 성남시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며 의결된 사항을 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23.3.29.>

② 제1항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단 업무에 반영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제35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9.4., 2017.1.16.>

제3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 직원으로 하며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9.>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회의록)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1인과 간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삭제 <2017.1.16.>

- ② 삭제 <2017.1.16.>
- ③ 삭제 <2017.1.16.>

제6장 사무기구

제39조(조직 및 구성)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정원은 281명(일반직 228명, 공무원 53명)으로 한다.<개정 2009.9.4., 2009.10.7., 2014.12.30., 2020.1.15., 2023.3.29.>

- ② 재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와 청소년시설로 구성된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조직·직제·정원·복무·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03.29.>
- ③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 시설의 직제, 조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인력지원 요청) ① 재단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5.>

제42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44조(공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을 위하여 설립받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당초의 임원) 재단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 2”와 같다.

제6조(고용승계 등) 재단은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규정에 따라 고용 승계 등을 위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용승계 대상자는 재단 설립 당시의 해당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한한다.

제7조(설립받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3”과 같이 설립받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사 기명날인)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4”와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부칙(2009.9.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1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5.)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